韓日経済協力의 問題点과 展望

企劃調査部

(一)

14年동안이나 難航을 거듭해오던 韓日会談은 지난 6月22日 下午5時 日本首相官邸에서 李東元外務部長官과 椎名悦三郎外相사이에 韓·日国交正常化를 為한 諸協定이 正式調印됨으로써 앞으로 韓·日両国議会의 批准만 얻으면 正式으로 発効하게 되는 것이다。

이날의 本調印에서 李·椎名外相間에 調印된 協定은 基本條約을 비롯하여 請求権, 漁業, 法的地位, 文化財等 基本協定만도 5個 그밖의 附属文書, 合意議事録, 交換公文, 外相声明, 農相間声明等 무려 30餘個에 達하는 방대한 것이다。

지난 4月3日의 仮調印以来 6.22本調印에서 30餘個의 協定이 締結되기까지에는 여러가지 複雑한 径路를 거쳤다。

그러나 이렇듯 벅찬 고비를 넘겨 이제 両国関係가 正常化됐다고 해서 과연 当初 두나라가 내걸었던 友好善隣의 関係나 共存共栄의 目的이 名実共히 이루어지리라고는 아직 速断하기 어려울것같다。

韓·日国交正常化의 政治的意義는 極東地域의 対共防衛를 공고히 하기 為한 美国側의 圧力이 크게 作用했다는点에서 評価되고 있다。

이러한 政治的인 意義와 함께 両国経済의 協力体制가 特히 日本의 実利主義에 立脚한 政経分離原則이 共存共栄의 当為的目的을 어느程度 具現시킬수 있을것인가는 両国間에 合議된 総額8億弗에 達하는 協力資金이 쓰여질 内容과 그方向에 따라 크게 左右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8億弗의 経協内容과 그問題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二)

韓·日経済協力은 無償供与3億弗, 財政借款2億弗, 民間借款3億弗以

上의 請求権 및 長期信用供与가 그 中枢的役割을 하게된다。

対日請求権은 지난 51年 第1次 韓日会談에서 韓国側이 日本에 対해 8個項目에 達하는 「対日請求権要綱」을 提示한데서부터 始作되었다。

그러나 対日請求権은 처음부터 韓日間에 顕格한 意見対立을 되풀이 하였다。

請求権의 規模는 두말할것도 없고 請求権発生에 対한 概念에 있어서도 서로 意見을 달리했다。

그러던것이 62年12月 「無償3億，財政借款2億，民間借款1億」으로하는 所謂 金·大平메모에서 비로소 解決의 실마리가 잡히기 始作하여 그後 李·椎名4．3仮調印에서 「3億，2億，3億」딸라로 増額 6月22日 이의 正式協定의 調印으로서 비로소 確定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請求権問題는 그概念에 있어 서로 見解를 달리하는 꼬리를 남겨놓았다。 日本側은 請求権의 削減代価로 8億딸라以上의 経済協力資金을 提供한다는 것이며 韓国側은 請求権으로 有·無償의 経済協力資金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히 따져 日本에서 볼때에는 賠償的性格인 請求権이 아니라 請求権削減代価이며 韓国側으로 볼때에는 賠償的性格을 띤 請求権이라는 것이다。

두나라가 맺은것은 請求権에 関한 問題解決 및 経済協力에 関한 協定이다。 앞으로 両国間의 国会批准이 끝나면 우선 이請求権을 中心으로 経協이 展開될것으로 豫想된다。 그런데 이번 協定을 보면 日本側은 請求権資金使用에 依한 購買方法，契約節次等에서 過去 東南亜地域에 対한 賠償의 境遇와 같이 主導権을 堅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請求権 및 経済協力에 関한 協定은 第1議定書，第2議定書와 附属文書로 構成되어 있다。

第1議定書는 7條 第2議定書는 6條로 構成되어 있으며 附属文書는 전기 議定書에 対한 施行細則을 規程하고 있다。

첫째 対日請求権 8億弗은 無償 3億弗, 財政借款 2億弗 民間商業借款 3億弗以上으로 되어있다。

無償提供 3億弗中 1億5千萬弗은 資本財以外의 生産物提供을 考慮할 用意가 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10年間에 걸쳐 均等分割提供한다。 그리고 財政借款 2億弗은 年利 3.5%에 7年据置 20年償還에 10年均等分割하며 借款契約을 韓国의 経済企劃院長官과 日本의 経済協力基金総裁間에 締結하고 이의 事業計劃을 為한 日本国의 生産物 및 日本人의 用役提供에 使用된다고 規程하고 있다。

둘째 生産物提供에 있어 第1議定書 2條1項은「日本国이 提供하는 生産物은 資本財 및 両国政府가 合意하는 其他의 生産物로 한다」(即 無償3億中 1億5千萬弗은 原資材로 考慮할 用意가 있음을 明文化)로 되어있고 2項은「日本国의 生産物 및 日本人의 用役提供은 大韓民国과 日本国間의 通常의 貿易을 顯著히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또한 外国換에 있어서의 追加負担이 日本国에 課하여지지 아니하도록 実施한다」고 되어있다。

세째 購買方法에 있어서는 第1議定書3條1項에 따라 契約締結을 日本国内에서 行한다는 것과 이契約의 締結이라함은 署名을 意味하며 署名에 이르기까지의 入札, 公告, 其他 行為에 対하여는 調達庁에서 그리고 其他의 境遇에는 大韓民国 또는 日本国에서하며 이 2項에 따라 日本国代表는 契約으로 輸送, 保険 또는 検査等 附随的인 用役의 提供을 必要로 하고 또한 이를為한 支払은 日本国民 또는 日本国의 法人에 依하여 行하도록 規程되어있다。

日本側에서 契約地를 日本으로 定했다던지 또는 購買契約対象을 日本法人으로 限定했다는 事実은 紛争解決의 有利한 点과 在日僑胞로 부터의 購買를 拒否한 것이고 輸送, 保険業等을 日本에서 맡겠다는 것이다。

네째 年度実施計劃은 大韓民国政府에 依해 作成되나 決定은 両国政府의 合議에 依해 決定키로 했다。 처음政府는 事業計劃을 作成하여 日本에 送付하는것으로 그치고 日本側에서 異議가 있을때만 合同委員会에 넘길것을 主張했으나 結局 両国協議決定으로 落着된 것이다。

다섯째 合同委員会를 東京에 設置하고 第1議定書에 따라 年度実施計劃의 認証 및 支払에 関한 節次等의 協議 乃至 決定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韓国側이 契約書를 送付한後 14日안에 認証되지않을 境遇는 이 委員会에서 1個月안에 決意決定토록 制約이 加해져 있는데 이는 마치 美国援助資金의 使用을 為해서 設置된 韓美経済協力委員会(ECC)와 같은 印象을 주고 있다。 다만 合同委員会가 서울에 設置되지 않고 日本에 設置키로 되었다는 것뿐이다。

여섯째 購買契約紛争解決을 為해서는 韓国側이 将次 締結될 別途의 仲裁協定에 規程할것을 主張한데 対해 日本은 日本의 商事仲裁委員会에 解決을 依頼키로 돼있는데 이는 마치 漁業協定上의 旗国主義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以上에서 본것처럼 購買契約을 비롯하여 輸送,保険 그리고 実施計劃 및 契約의 認証,紛争解決等에 걸쳐 그 主導権이 모두 日本에 帰属되어 있다。

特히 制度別 実施計劃에 있어 品目 및 事業計劃面에서 일일히 日本側과의 合議를 보아야만 된다는点 日本政府의 認証을 必要로 한다는点等 앞으로 請求権資金使用에 적지않은 難題가 가로놓여 있다는 것이다。

지금 政府는 協力資金使用에 있어서 「多数国民에게 그恵沢이 골고루 미칠 수 있는」方案을 構想하고 있다고 하는데 無償3億弗中 1億5千萬弗을 鉄道,水力発電等 基礎産業에 投資하고 나머지 1億5千萬弗은 原資材로 導入하여 回収된 원貨를 이産業의 内資로 充

当하며 財政借款 2億弗은 輸出 및 輸入代替産業施設導入에 置重하고 労動集約的인 中小企業育成에 投資할 方針이라고 한다。

그리고 商業借款 3億弗以上은 政府가 支払保証을 안하는 原則아래 民間「베이스」로 導入할 方針이며 또한 導入物資의 販売로 調達되는 원貨를 公開的으로 올바르게 使用하고자 「特別会計」를 設置하여 이資金의 効率的인 使用을 図謀할 方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請求権이 果然 어느程度로 우리나라 経済発展에 寄与하게 될지는 적지않게 疑問視된다。

그理由로서는 첫째 規模에 있어서 8億弗以上의 有・無償経協資金의 供給이기는하나 그가운데서 実際 重要한것은 無償 3億, 財政借款 2億弗인데 10年 分割供与하고 또 無償 3億弗가운데는 4千7百萬弗의 対日清算計定上의 負債를 控除하기로 되어있으므로 実質的인 年間受入額은 約 4千5百萬弗에 不過한 것이다。 우리나라 外貨事情으로보아 多多益善임에는 틀림없으나 年間無償 2千5百萬弗과 財政借款 2千萬弗이 우리나라 経済開発에 劃期的인 役割을 하게되리라고 楽観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다음은 請求権 및 経済協力協定의 運用에 있어 果然 어느程度 実利를 追求할 수 있겠는냐 하는 点이다。 協定上의 運用節次에 主体性이 欠如되어 있고보면 資金의 効率性이 所期의 成果를 거두기 為해서는 相当한 努力을 必要로 할것이다。

세째는 運用節次上의 難点이 過去의 日本의 東南亜細亜地域에 対한 賠償遅延처럼 経済協力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가 하는 것이다。 日本側은 우리側의 受入態勢의 未洽을 핑계삼아 萬一 日本側의 要求대로 우리側이 譲歩하지 않으면 이를 저연시킬지도 모를일이기 때문이다。

이런点에서 앞으로의 経済協力이야 말로 어려운 段階에 들어서게 된 것이며 請求権의 効率있는 運用如何야 말로 곧 韓・日国交의 歴史的当為를 実証하는 尺度가 될것이다。

(三)

「経済協力에 関한 協定」에 따른 附属文書에서 3億弗以上의 商業「베이스」의 民間信用을 日本이 韓国에 提供할것을 考慮한다고 밝히고 이中 9千萬弗은 漁業協力을 為해 그리고 3千萬弗은 船舶輸出을 為해 供与할것을 밝히고 있다。

民間商業借款은 62年12月의 金·大平「메모」에서 『1億弗 프라스「알파」』라는 表現으로 提起되었던 것이다。 協定에는 正式으로 挿入하지 못하고 交換公文形式으로 韓·日두나라 사이에 合意되었다。

請求権 및 経協協定에서 無償供与와 財政借款을 日本의 義務, 韓国의 権利로 뚜렷하게 다루고 있는데 対해 交換文書形式을 빌린데서 알 수 있듯이 商業借款은 前記한 5億弗과는 性格이 다르다고 하겠다。

다시말하면 無償과 財政借款은 一種의 賠償的性格을 띤 請求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商業借款을 우선 性格부터 모호하고 協定上 拘束力이 薄弱하다。

交換文書에 나타난 商業借款의 性格을 無償3億과 財政借款2億을 中心으로한 協定과 比較하면서 대충 훑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交換公文에서 両国은 商業上의 民間信用去来를 「諒解」하고 이를 確認한다。 協定이 請求権問題解決과 経済協力増進을 希望하여 無償과 対政府長期信用을 供与할것에 「合意」했다는 表現과는 強弱에 있어서 顕著한 「뉘앙스」의 差異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둘째 交換文書는 3億弗以上의 民間信用이 提供될것으로 「期待된다」고 했는데 協定이 밝힌 5億弗의 授受 및 使用方案에 対한 具体的인 規定에 比하면 그 表現이 拘束力을 거의 排除하고 있다 勿論 3億弗以上 規模의 商業借款이 우리에게 꼭 必要한것이고 또 우리가 받아드릴 態勢가 되있는가 하는 点이 보다 重要한것임은 말할것도 없다。

이民間信用에는 漁業協力資金 9千萬弗과 船舶資金3千萬弗이 包合되

어 있는데 이에 対해서는 日本政府는 「可能한限 好意的으로 配慮」하기로 했다。

세째 商業借款의 提供은 関係法令의 範囲안에서 「容易」하게 또 「促進」된다고 表現되어있다。

이는 商業借款提供에 있어서 償還期間 및 利子率等 日本이 現在 다른나라에 供与하고 있거나 또는 韓国이 日本아닌 다른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民間信用보다 有利하게 될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리라는 点을 십사리 豫見케 하는것으로 商業借款을 請求権의 一部로 보는 這間의 主張의 根拠를 薄弱하게 하고 있다。 特히 交換公文은 商業借款을 언제부터 始作하여 언제까지 提供할것인가하는데 아무런 言質도 없다。

그러나 重要한 問題는 이같은 性格上의 差異가 아니라 3億弗以上이라는 伸縮性있는 表現을 빌린 이商業借款의 実現性与否이다。

앞으로 展開될 韓·日経済協力은 우선 無償3億弗과 財政借款2億弗이 中枢를 이루리라는 点은 協定発効와 同時 이 資金이 供与되리라는데서 明白하다。

無償3億弗가운데서 清算計定上의 対日負債4千7百萬弗을 10年間分割控除하기로 한만큼 実地的인 年間受入額은 約4千5百萬弗에 不過하겠지만 美国을 비롯한 諸国家들로 부터의 各種借款과 더불어 内資需要를 크게 増大시킬것이다。

所要内資의 規模가 이처럼 増大될때 商業借款을 活用할 수 있는 内資調達이 果然 可能할지도 疑問이다。 좀처럼 풀릴것 같지 않은 経済界의 逼薄한 資金事情과 「인플레」抑制와 安定基調를 堅持하기 為해서는 当分間 必要悪으로 存在価値가 認定되고 있는 緊縮財政金融政策의 渦中에서 内資動員은 決코 順調롭지 않을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商業借款은 그것이 3億弗이건 或은 그以上이건 内資調達이 어려우리라는 点에서 이의 活用은 全的으로 우리나라의 外資受入能力과 姿勢에 달려있다고 보지않을 수 없다。

萬若 우리의 受入態勢가 確立되지 못할境遇 그리고 日本側의 意図대로 무턱대고 受入할때 商業借款은 韓·日経済의 共存共栄을 為한 媒介物로서의 役割을 하기보다도 日本의 斜陽産業整理를 돕는 結果를 가져올것이다。

特히 民間商業借款에 있어서는 政府의 支払保証이 期必 排除되어야 할것이다。 萬一 民間信用供与에까지 政府가 支払保証을 한다면 그야말로 이는 넓은 意味에서의 請求権의 一環으로서의 民間信用供与가 아니라 日本의 過剰蓄積資本의 輸出을 우리나라가 支払保証까지하여 받아드리는 結果가 되고 말것이다。

(四)

以上과 같은 対日経済協力의 内容은 그것이 우리의 主体的 및 計劃的意図下에 実践되는 날 우리나라経済는 国内建設뿐 아니라 対外均衡面에서 큰成果가 이루어질것으로 期待된다。 그러나 오늘날 世界経済의 흐름은 戦後의 援助로부터 借款으로 借款으로부터 貿易으로 変貌하고 있음을 否認못할 것이다。 特히 우리나라의 境遇 美国의 無償援助가 차츰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 長期借款으로 変해가고 있는 만큼 自力으로 輸出能力을 培養해서 借款의 元利金償還을 期함은 勿論 経常的인 輸入需要를 메꾸어야 하는만큼 対日経済協力에 있어서도 両国間에 이때까지 가로놓여 있던 貿易不均衡을 是正하는데 格別한 努力을 다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日本은 64年度의 輸出実績이 66億弗에 達하고 있고 앞으로 数年来로 1百億弗의 輸出目標를 세우고 있다。 이에比하면 우리나라 今年度輸出目標가 1億7千萬弗 66年度에는 2億3千萬弗가량 策定하고 있으니 두나라交易은 1百億弗対 2億弗이라는 엄청난 隔差아래서 제각기 熾烈한 輸出競争을 벌릴것이다。

이와같은 実情가운데서도 日本의 対韓輸出依存度는 至極히 낮은 反面 우리나라의 日本에 対한 輸出依存度는 世界到処에 散在한 어

느市場에 対한 依存度보다 높다。

韓·日協定은 基本関係條約 第5條에서「貿易 및 其他 通商上의 関係를 安定되고 友好的인 基礎위에 두기 為해 條約 또는 協定을 締結하기 為해 実行可能한 早速한 交涉을 始作할것」을 規定하고 있다。

이 基本條約에 따라 政府는 8月下旬頃 貿易会談을 가질 豫定이라고 하지만 이미 지난 4月 東京에서 열린 韓·日貿易実務会議에서 ①1次産品에 対한 輸入制限의 撤廢乃至 緩和 ②船舶輸出禁止措処의 解除 ③原資材無換輸出과 関税障壁의 徹廢等 交易不均衡에 가로 놓인 問題点을 是正하는데 原則的인 合意를 보았고 1次産品의 対日輸出增大를 為해서는 海苔, 無煙炭, 오징어, 魚介類等 水産物의「코타」增額을 約束한바 있다。

그러나 日本은 5百萬束으로 約束된 海苔輸入「코터」割当을 遲延시키고 있는 판국인데 앞으로 있을 貿易会談에서 日本이 어느程度 積極的으로 韓国側의 要請에 応할지 疑問이다。

韓·日両国이 真実로 極東에 있어서의 自由陣営의 結束이라는 큰 目的을 遂行하자면 経済協力의 内容이 名実共히 互恵的인것으로 実現되어야 하고 또 한걸음 나아가서 両国貿易의 激甚한 不均衡을 解消하는데 注力하지 않고서는 国交正常化의 大局的인 名分은 喪失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